투자위험등급: 1 등급 [매우높은위험]

하나 UBS 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글로벌금융주의귀환증권투자신탁[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글로벌금융주의 귀환증권투자신탁[주식]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글로벌금융주의귀환증권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 UBS 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판매회사 영업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u>www.kofia.or.kr</u>) 및 집합투자업자 (www.ubs-hana.com)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10년 3월 23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10 년 3월 25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제 1 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1. 명칭
- 2. 모집예정기간
- 3. 모집예정금액
- 4. 펀드존속기간
- 5. 분류
- 6. 집합투자업자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주요 투자대상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목적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3. 수익구조
- 4. 주요 투자위험
-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6. 운용전문인력
-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 (1) 연평균 수익률
 - (2) 연도별 수익률

제 3 부. 매입 환매 관련 정보

- 1. 수수료 및 보수
-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2. 과세
-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 환매 절차
- (1) 기준가격 산정
- (2) 매입 및 환매 절차
- 4. 전환절차 및 방법

제 4 부.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 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8. 이 투자설명서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여 정식 투자설명서의 표현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하나 UBS 글로벌금융주의귀환증권투자신탁[주식]	79899
А	79491
С	79492
C2	79493
C-E	79494

2. 모집예정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1 조좌

이 투자신탁은 1 조좌까지 모집(판매)가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단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 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가.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하나 UBS 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 빌딩 (02-3771-7800)		

나.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 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하나 UBS 자산운용㈜에 있습니다.

해당펀드	하나 UBS 글로벌 금융주의 귀환증권투자신탁[주식]				
해외수탁운용사	UBS Global Asset Management				
업무위탁범위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 조사분석업무 / 단순매매주문업무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 주요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			
		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			
		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			
1. 외국주식	60% 이상	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및			
1. 최독구역	00% VI3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중 증권거			
		래소에 상장된 것으로 은행, 투자금융, 보험 및 부동산 등을 주 사			
		업영역으로 하는 금융(Finance)관련 업종에 속하는 주식(이하 "외			
		국주식"이라 하며,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40% 이하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2. 채권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2. 세건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			
		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			
		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3.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			



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 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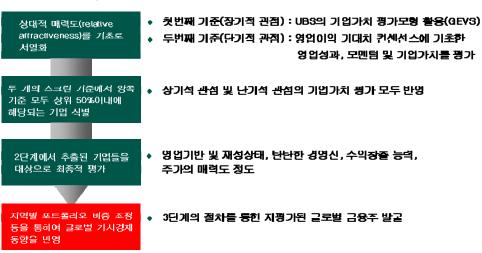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u>글로벌 금융 관련 업종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u> 대상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에서 야기된 글로 벌 금융 관련 업종 주식의 저평가 상태 회복에 따른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금융 관련 업종의 저평가 상황에서 존재하는 투자 기회 등을 고려하여 투자신탁의 대부분을 은행, 투자금융, 보험 및 부동산 등을 주 사업영역으로 하는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금융(Finance) 관련 업종 주식에 투자
-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투자는 해외위탁운용회사인 UBS Global Asset Management Limited 가 위탁 운용하며 투자 유니버스 구축, 포트폴리오 구성 및 리밸런싱, 편입 종목 모니터링 등을 통해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수익 추구
- 내부적으로 고안된 평가 기준 및 거시경제 전망에 따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은 저평가된 글로벌 금융주를 선정하여 투자
 - => 영업기반 및 재정상태, 탄탄한 경영진, 수익창출 능력, valuation 을 고려하여, 장·단기적 관점에서 금융주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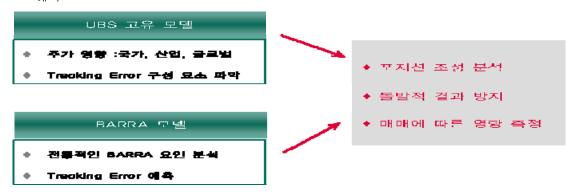
(2) 비교지수: MSCI World Financial Index *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글로벌 금융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MSCI World Financial Index *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3) 위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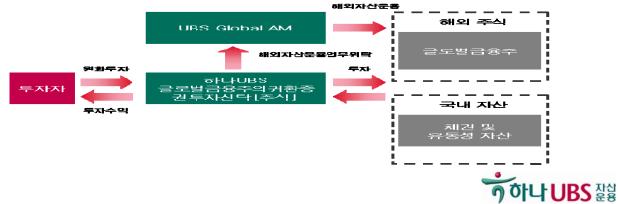
• 2개 모델 사용 : BARRA 모델과 UBS 고유 모델을 통한 보유 주식의 위험 및 Tracking Error 예측



- 주 1) BARRA 모델 : 주식계량평가 회사인 BARRA 사에서 개발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위험 관리모델
- 통화선물, 선물환 거래 등을 이용하여 목표 **환헷지비율 100% 수준**으로 헷지
 - ► 해외투자자산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해 주요통화에 대해 헷지하며, 목표 환헷지 비율은 주 요통화자산에 대해 해외 투자자산의 100% 수준입니다. 그러나 개방형, 추가형 투자신탁 으로 설정・해지가 빈번하며, 해외 자산의 순자산 가치가 변동한다는 제약조건 하에 환 헷지를 수행하므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외자산은 주요 통화(유로, 달러, 엔) 환산 상당액에 대하여 원화 대비 환헷지를 실시할 예정이나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기타 통화 자산과 주요 통화간의 환율 변동 위험에는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이 투자신탁에서는 환헷지의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금융주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글로벌 금융주 등의 가격변동 에 따른 운용 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
시장위험 및	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개별위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
	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금융주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주의 가격
주식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지역의 지
변동위험	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
	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해외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
완혈연공에 따른 위험	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
따른 귀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
이자율	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행하나, 이자율
변동위험	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E 5 7 E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한국의 국공채, 신용등급 A- 등급 이상의 우량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
선당기점 및 부도위험	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
ナエガ 8	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
파생상품	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
투자위험	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
구시기점	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
	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그기이원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국가위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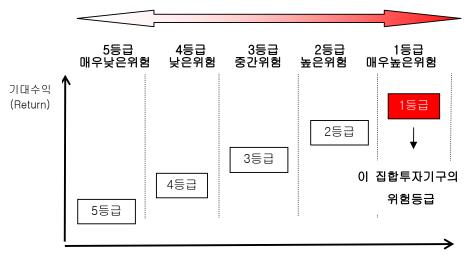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을 글로벌 금융업관련 기업에 집중투자함으로써 금융업 섹터 주식				
	의 성과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섹				
집중 투자위험	터나 스타일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상장 주식전체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일반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으며, 전체 시장의 성과와도				
	다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과세에 따른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				
위험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가증권,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				
및 신용위험	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				
유동성 위험	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특히 글로벌 금융주)에 주로 투자하고,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글로벌 금융주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 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글로벌 금융주와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투자위험 (Risk)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및 펀드예시㈜]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 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위험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30% 이상인 금융공학형집합투자			
		기구			
		•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 분산요건을 충족하되,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			
		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 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0%이상 -30% 미만인 금융공학			
		형 집합투자기구			
		• 분산요건을 충족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 위험자산에 최대 50% 미만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상 -1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채권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차익거래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	•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위험	•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UBS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 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운용전문인력(2010.2.21 기준)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	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ı	99	25	" "	운용중인 다른 다른운용		구프로등장의 뜻 이의



			집합투자기구수	자산규모	
			11 개	832 억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정관옥	1968	부부장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채권, 주식투자 7년
			-	-	- 해외조사 4년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나. 위탁운용사 운용전문인력

성 명	소속 부서		운용중인 자산규모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Gert van	주식 리서치 본부	상무(MD)	5억 달러	- 운용경력 12년
Rooyen	(Pan-European)	(WID)	[2010.03.01 기준]	

7. 투자실적추이 (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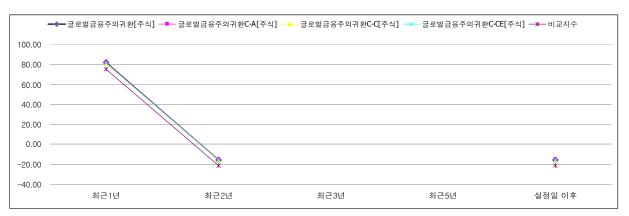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MSCI World Financial Index * 100%

주 2) 비교지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기준일: 2010년 2월 21일, 단위:%)

연도	최근1년 2009.02.22 ~ 2010.02.21	최근2년 2008.02.22 ~ 2010.02.21	최근3년 3	최근5년 4	설정일 이후 2008.02.22 ~ 2010.02.21
글로벌금융주의귀환[주식]	81.73	-15.60			-15.60
글로벌금융주의귀환C-A[주식]	82.33	-15.28			-15.28
글로벌금융주의귀환C-C[주식]	80.65	-16.20			-16.20
글로벌금융주의귀환C-CE[주식]	81.23	-15.85			-15.85
비교지수	75.46	-21.37			-21.37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준일: 2010년 2월 21일, 단위:%)

연도	최근1년차 2009.02.22 ~ 2010.02.21	최근2년차 2008.02.22 ~ 2009.02.21	최근3년차 3	최근4년차 4	최근5년차 5
글로벌금융주의귀환[주식]	81.73	-60.81			
글로벌금융주의귀환C-A[주식]	82.33	-60.64			
글로벌금융주의귀환C-C[주식]	80.65	-61.12			
글로벌금융주의귀환C-CE[주식]	81.23	-60.93			
비교지수	75,46	-64.77			



Ⅲ.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 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시기	
т ш	종류 A	종류 C, 종류 C2, 종류 C-E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_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30 일미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환애시
건매구구료	이익금의 10%	90 일미만: 이익금의 30%	전배N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종류 A	종류 C	종류 C2	종류 C-E	시티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	0.750%	0.750%	0.750%	매 3 개월



판매회사보수	0.750%	1.750%	0.100%	1.400%	후급
신탁업자보수	0.060%	0.060%	0.060%	0.06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	0.018%	0.018%	0.018%	
기타비용	0.115%	0.114%	-	0.118%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1.693%	2.692%	0.928%	2.346%	
증권 거래비용	0.247%	0.244%	_	0.255%	사유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회계년도2010.2.21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회계년도 **2010.2.21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 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구 분 (원)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273,510	646,991	1,058,754	2,282,393
종류 C	275,895	869,758	1,524,492	3,470,173
종류 C2	95,108	299,827	525,531	1,196,256
종류 C-E	240,434	757,969	1,328,551	3,024,155

-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2) 종류 A 수익증권과 종류 C 수익증권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 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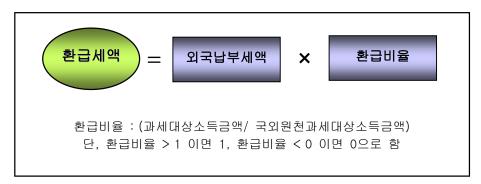
2.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 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라.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 기구 등으로 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부터의 배당소 독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
	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
기준가격 산정방법	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
	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판매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
종류간 기준가격이	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수수료 등 종류별
상이한 이유	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
	습니다.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
기준가격 산정주기	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
기군기국 선정구기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서류공시]
	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기준가격	[전자공시]
공시방법 및 장소	집합투자업자(<u>www.ubs-hana.com</u>)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u>www.kofia.or.kr</u>)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매입 및 환매절차

(1)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 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C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2	기관투자가 및 집합투자기구 등



종류 C-E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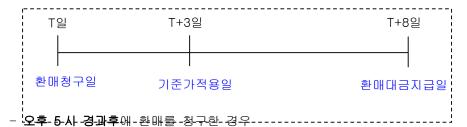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3일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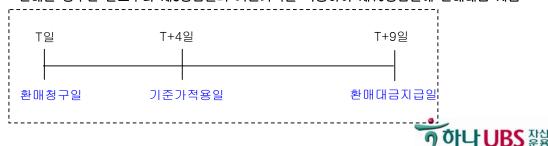
(2) 환매

-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4.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요약재무정보	제 2 기	제 1 기
	20100221	20090221
Ⅰ .운용자산	32,260,263,104	15,958,075,914
증권	30,382,220,761	14,675,548,139
현금 및 예치금	1,401,042,343	1,282,527,775
기타운용자산	477,000,000	
II. 기타자산	1, 181, 494, 171	1,747,224,126
자산총계	33,441,757,275	17,705,300,040
II. 기타부채	567, 183, 187	2,183,007,970
부채총계	567, 183, 187	2,183,007,970
1. 원본	46,177,569,607	39,599,200,942
II. 수익조정금	-2,253,241,910	1,663,666,698
111. 이익잉여금	-11,049,753,609	-25,740,575,570
자본총계	32,874,574,088	15,522,292,070
Ⅰ . 운용수익	13,618,776,063	-25,281,689,988
이자수익	14,508,301	93,024,443
배당수익	461,858,077	786,235,024
매매/평가차익(손)	13,088,824,488	-26,291,170,650
기타이익	53,585,197	130,221,195
11. 운용비용	591,620,800	458,885,582
관련회사보수	558,388,522	411,410,435
기타비용	33,232,278	47,475,147
III. 당기 순이익	13,027,155,263	-25,740,575,570
* 매매회전율	94	230
* 매매수수료	71,070,116	157,581,758

